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합501633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주옥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6,790,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3. 5.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018.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C 주식회사는 2018. 5. 2.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인 원고에게 건설사업 부문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및 분할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건축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사이다.

2) 피고는 원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D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용인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2017. 7. 28. D와 사이에 그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7. 28.부터 2018. 11. 30.까지, 공사대금 27,936,389,779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3. 30. 위 공사기간은 그대로 하되 공사대금을 28,667,909,050원으로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변경 전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② 원고 또는 D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D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특약조건]

제6조(계약해제·해지)

① D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D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및 해제에 따라 D의 계약보증금(또는 증서)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5. 기타 D이 이 계약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중요 부분의 의무위반 행위를 할 때

6. D의 고의적이고 불성실한 계약의무 불이행이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② 전항의 계약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은 계약금액의 10%로 간주하며(손해배상액의 예정), 손실액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D과 피고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1) D은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D이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793,683,977원, 보험기간 2017. 7. 28.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D은 2018. 4. 2.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가입금액을 2,866,790,905원으로 증액하는 이행보증보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계약변경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변경 전후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편입된 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갑 제5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

제19조(주계약의 해지)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제20조(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라.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지통보 및 보험금 지급청구

- 1) 원고는 2018. 7. 31. D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25조 및 계약특약조건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갑 제19호증, 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D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 2) 원고는 2018.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2,866,790,90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보상심사를 연기하였다.

3) 원고는 2021. 7. 15. 피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D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8706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2. 9. 28.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8. 7. 31. 당시 D이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율은 70.24%이고, 위 기성고율에 따라 산정한 D의 원고에 대한 잔여 기성금 채권액은 1,696,745,991원이나, 위 기성금 채권은 원고가 D의 요청에 따라 D의 근로자 및 거래처 등에 합계 1,778,056,691원의 노무비 기타 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부 소멸하였다.'라고 판단하고, D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957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21 내지 23, 2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D은 근로자 및 거래처 등(이하 '거래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무비 기타 대금(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을 반복적으로 체불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채 공기를 지연하였고, 결국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러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특약조건 제6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각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은 계약특약조건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인 2,866,790,905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2,866,790,9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이 거래처 등에 대하여 대금 등을 체불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의 해지통보 당시 공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볼 때 D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거나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와 D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내지 11, 15 내지 17, 50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전인 2018. 2.경부터 D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D의 대금 등 체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받았다.
- ② 원고는 2018. 3. 30. D과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D로부터 ‘계약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사 소속 직원 및 근로자들의 노임, 자재비 및 기타 미지급 채무에 대해서 당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완불한다.”라는 각서를 작성 받아 변경계약 서류로 첨부하였고, 계약특약조건으로 “재하수급인들의 보호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D은 본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현장의 재하수급인 및 이에 상응하는 자들에 대한 각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제10조 제1항)을 규정하였다.
- ③ 원고는 2018. 5. 7.부터 2018. 7. 7.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D에 ‘D의 거래처 등이 대금 체불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연된 공기만회 대책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④ 원고는 2018. 7. 20. D에게 ‘D의 체불 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일 원고, D 및 거래처 등의 참석 하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회의 도중 D 측이 무단으로 이탈한 후 연락을 두절하여 원고와 거래처 등의 신뢰를 더욱 훼손하였다.’라고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⑤ D의 거래처 등은 2018. 7. 28. 체불된 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⑥ 관련 소송에서는 D이 2017. 6. 16.부터 2018. 7. 31.까지 411일간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이 70.24%라고 인정되었다.

⑦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D의 원고에 대한 잔여 기성금 채권액은 2018. 7. 31. 기준으로 1,696,745,991원인 한편, 원고가 D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집계한 대금 등의 체불 액수는 2018. 7. 31. 기준으로 5,237,944,780원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D의 계약 위반에 따른 원고의 2018. 7. 31.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계약특약조건 제6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해지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전부터 D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체불 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시 D로부터 특별히 ‘거래처 등에 대하여 대금 등을 체불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계약이행각서를 징구하고 ‘거래처 등에 대한 대금 등 체불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계약특약조건을 부가하고자 하였고, D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D이 거래처 등에 대금 등을 체불하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로 편입되었다.

② 그런데 D은 거래처 등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잔여 기성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규모의 대금을 반복적·누적으로 체불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8. 7. 중순경부터는 D의 거래처 등이 대금 체불에 항의하면서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의 2018. 7. 31.자 해지통보 당시 D은 411일간 이 사건 공사의 70.24%를 수행하였으므로, 종전과 같은 속도로 잔여 부분인 29.76%를 수행할 경우에는 2018. 8. 1.부터 약 174.1일¹⁾이 소요되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2018. 11. 30.보다 약 2개월 늦은 2019. 1. 22.경에야 공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 결국 D이 이 사건 공사를 약정된 기한 내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D이 체불한 대금 등의 규모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D의 재정 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D이 이 사건 공사를 기한 내에 완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④ 결국 D은 거래처 등에 막대한 규모의 대금 등을 체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지연시킴으로써 계약이행각서 및 계약특약조건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의무를 ‘고의적이고 불성실하게 2회 이상 불이행’하였고(계약특약조건 제6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이 계약의 중요 부분의 의무를 위반’하였는바(같은 항 제5호), 이로써 이 사건 계약특약조건 제6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나. 보험금의 범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특약조건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계약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은 계약금액의 10%인 2,866,790,905원(= 28,667,909,050원 × 10%)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손실액에 해당하는 2,886,790,905원이다.

다. 지연손해금의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이 2018. 8. 24.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18. 8. 25.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5조 제2항),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7일이 경과한 2018. 9. 1.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866,790,9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이행기 다음날인 2018.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빈, 판사 김승현, 판사 김현주

1) $174.1\text{일} = 411\text{일} \times 29.76\% / 70.24\%$.